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097
----------	------

2021년 3월 3일
교육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0년 12월 23일, 김용연 의원

2. 회부일자 : 2021년 1월 21일

3. 상정일자

○ 제29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

(2021년 3월 3일 상정·원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용연 의원)

1. 제안이유

○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발주자는 석면해체·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석면안전관리법」에서 ‘석면해체·제거’로 사용되고 있어 현행 조례의 띄어쓰기를 수정함(안 제7조)
- 나.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의2 신설).

III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은 2020년 12월 23일 김용연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097호로 발의되어 2021년 1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석면안전관리법」에 규정되어 있는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감리인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2. 주요 검토의견

- 동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2는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할 경우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고, 석면해체·제거작업감리인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은 환경부장관 등이 고시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현행 「석면안전관리법」(이하 ‘법’)에서는 석면을 해체·제거하기 전 설계 및 집행단계에서 일정조건 이상의 사업장¹⁾의 경우 석면해체·

1) (환경부, 고용노동부, 국토교통부) 「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」 제3조(감리인 지정 및 배치기준) ① 발주자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.

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, 감리인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「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」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(법 제30조2).

-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의 석면해체·제거 가이드라인 및 학교시설 석면해체·제거 안내서에서도 석면해체 및 제거작업 시행전에 감리인을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,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감리인 지정의 입법취지 및 법적·절차적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다만, 이미 상위법률에서 의무화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동일하게 명시하는 것은 입법체계나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, 동 규정은 석면해체 및 제거 작업시 관련자들로 하여금 상위법의 규정사항을 인지시키고 석면해체·제거작업감리인의 지정을 독려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없음을 밝힌바 있습니다(행정관리담당관-2024.,2021.2.9.)

-
1.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
 2.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
- 2) 제30조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) ① 발주자는 석면해체·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감리인(이하 “석면해체작업감리인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여야 한다.
- ②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.
 -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 - ④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,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V. 토론요지 : 없음

VI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
VI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
VIII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IX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 제목“(석면 해체·제거 공사 일정)”을“(석면해체·제거 공사 일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석면 해체·제거”를 “석면해체·제거”로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) ① 석면해체·제거작업 및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·제거작업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석면해체·제거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,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석면 해체·제거 공사 일정)</p> <p>① 학교의 장은 석면건축물 및 물질의 <u>석면 해체·제거 공사</u>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일정 등을 담은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7조(석면해체·제거 공사 일정)</p> <p>① ----- ----- <u>석면해체·제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7조의2(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관리인 지정)</u> ① <u>석면해체·제거작업 및 석면해체·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30조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·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·제거작업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석면해체·제거작업관리인의 지정기준,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,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 바에 따른다.</u></p>